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부금의 성과 평가 및 공개〉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171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교부금의 성과 평가 및 공개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7. 27.
3. 회부연월일 : 2026. 7.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국가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교육감이 회계연도별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공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제1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교부금의 성과 평가 및 공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시·도의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교부금의 지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성과분석이 적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2조의2(교부금의 성과 평가 및 공개)</u> <u>① 시·도의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교부금의 지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u> <u>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이 적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제2항에 따른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의 방법</u>

현행	개정안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것으로,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규모가 결정되고,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도록 정하고 있음¹⁾.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9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방식은 국가 세수의 일정 부분을 지방 교육재정에 배분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국가재정 여건과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현행 교부금 산정방식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최근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교부금 규모는 세수 증가에 따라 확대되면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별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공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부금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교부금은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으로, 2025년도 가결산 기준 교육비특별회계의 약 69%가 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보통교부금은 특정 사업에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재원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되는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전반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2025년 가결산 기준) >

구분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자체 이전 수입	자체 수입	내부 거래	기타	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증액 교부금*	국고 보조금	특별회계 전입금**					
금액(억원)	702,812	4,729	4,831	32,309	157,377	9,740	50,292	56,871	1,018,961
비중(%)	69.0	0.5	0.5	3.2	15.4	1.0	4.9	5.6	100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 **영유아특별회계 전입금
(자료: 교육부)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부금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교육재원이 학생 교육과 교육환경 개선 등 실제 교육수요에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특히 감사원의 교부금 제도 운용실태 감사 등에서는 현금·복지성 지원사업 등이 집중점검된 바 있어 이러한 점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²⁾.

□ 다만,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주요 재정사업 평가³⁾, 재정분석

2)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2023.7) 감사에서 교부금 증가 추세분석 제시, 현금·복지성 지원사업 등 방만 재정 문제점을 집중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함.

3)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제59조는 제외한다)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및 재정진단⁴⁾ 등 성과관리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특히,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은 매년 지방교육 재정 운용 전반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가 공개⁵⁾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석 결과를 재정 운용에 환류하는 역할을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⁶⁾, 이를 통해 교육청의 예산 편성·운용 및 교육성과 등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4) 「지방재정법」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중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분석(이하 “재정분석”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실시해야 한다.

5)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www.eduinfo.go.kr/m/main.do>)

6)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평가의 기준) ① 시·도교육청평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운용

2. 관할 학교 및 교육기관 등의 운영·감독

3. 학교 교육 지원 및 교육 성과

4. 학생 및 교원의 교육 복지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와 같이 현행 제도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및 성과에 대한 분석·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교부금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성과분석 및 전문기관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기존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와 중복 가능성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현행 제도와 관계 및 차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은 총액 교부되어 교부금만의 지출 성과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도 교육청의 전반적인 ‘재정 성과’로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함.

시·도교육청(부산, 대구, 충남)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체계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와 평가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를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평가의 중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5